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5
----------	------

발의연월일 : 2005. 11. 16.

발 의 자 : 이은영 · 강봉균 · 고경화
김동철 · 김성곤 · 김영주
김영춘 · 김우남 · 김희선
노영민 · 문학진 · 문희상
민병두 · 박명광 · 배기선
선병렬 · 손봉숙 · 신기남
신학용 · 염동연 · 오영식
우윤근 · 우제창 · 유재건
이계진 · 이상경 · 이시중
이인영 · 장복심 · 장영달
전재희 · 정상선 · 제종길
조성래 · 조일현 · 한광원
한명숙 의원(37인)

제안이유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기능 저하 등 가정생활의 모습이 바뀌었고 아울러 이혼, 가족구성원의 유기, 자녀양육의 해태 등 가족의 해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가정의 해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

히며,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켜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됨.

가족해체의 원인인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협의이혼의 비중이 높음. 부부가 일시적인 파국을 맞아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요망됨. 미성년의 자(子)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상담(강제적 상담)을 통해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미성년의 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담(임의적 상담)을 권고함으로써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부부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족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담”이라 함은 혼인생활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또는 이혼 후의 건강한 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심리학·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는 일체의 원조활동으로서 법원상담과 법원외상담을 말함 (안 제2조).

나. 법원은 이혼절차개시일부터 3월의 숙려기간 후에 이혼의사확인

또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조정·화해·결정·판결을 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외상담을 받은 증명서와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모든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부의 쌍방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재판상이혼 사건의 제1심을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지원장은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상담인을 위촉함(안 제7조).

바. 법원행정처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법률구조법인 등 상담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개인 중에서 법원외상담인을 지정함(안 제8조).

사. 법원은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의 전제가 된 상담시간 및 기타 필요한 상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담비용을 부부의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함(안 제9조).

아. 상담인 또는 상담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의 내용을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혼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이혼의 경우 이혼 후의 건강한 적응을 원조하며 미성년자인 자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이라 함은 혼인생활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또는 이혼 후의 건강한 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심리학·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는 일체의 원조활동으로서 법원상담과 법원외상담을 말한다.
2. “상담인”이라 함은 상담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원상담인과 법원외상담인을 말한다.
3. “법원상담”이라 함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또는 재판상이혼의 조정신청서·화해신청서·소장의 접수일(이하 “이혼절차개시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의 법원상담인이 제공하는 상담을 말한다.

4. “법원의상담”이라 함은 이 법 제4조 이하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상담으로서 법원상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숙려기간) 법원은 이혼절차개시일부터 3월(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 후에 이혼의사확인 또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조정·화해·결정·판결(이하 “이혼의사확인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부부의 쌍방이 이혼절차개시일 전 3월 또는 숙려기간 내에 법원 상담 또는 법원의상담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 부부의 쌍방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숙려기간 내에 이혼의사확인등을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의 이혼시 상담강제) ①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의 쌍방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일 전 3월 이내에 법원의상담을 받은 증명서
2.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부부의 쌍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법원

상담 또는 법원의상담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부부의 쌍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의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합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증명서 또는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부부의 쌍방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담권고)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모든 재판상이혼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부의 쌍방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의 기본원칙) ①상담인은 부부의 쌍방을 동시에 면접하여야 한다.

②상담인은 필요한 경우 부부의 자녀와 부모 등 이해관계인을 면접하거나 다수의 부부를 상대로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상담인은 부부의 쌍방이 불화의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④상담인은 상담을 제공함에 있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인격의 존엄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상담인은 혼인생활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부부간의 의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 부부재산의 귀속·관리·처분·청산 등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7조(법원상담인) ①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또는 재판상이혼 사건의 제1심을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상담인을 위촉한다.

②법원상담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법원외상담인) ①법원행정처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법률구조법인 등 상담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외상담인을 지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상담의 시간 및 비용) ①법원은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의 전제가 된 상담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상담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외상담인은 상담을 받은 부부의 쌍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부부의 쌍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담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0조(상담증명서) 상담인은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상담의 일시, 장소, 시간, 방법, 비용 등을 기재한 상담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의 원용제한) 상담과정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다른 재판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2조(비밀누설죄) ①상담인 또는 상담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의 내용을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담인 또는 상담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법원상담원의 수당과 위촉, 법원외상담인의 자격, 상담시간, 상담비용 등 그 밖에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